

수원대학교 통계조사연구소 규정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수원대학교 부설 통계조사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소재) 연구소는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목적) 연구소는 통계학의 이론 및 응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계 및 조사 관련 제반 분야에 관한 연구와 용역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각종 통계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 업무
2. 통계 상담 및 교육 업무
3. 통계 처리 및 분석 업무
4.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워크샵 개최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5조(소장)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되,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6조(조직) 연구소에는 행정실을 두며, 연구원, 연구조원, 연구조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
1. 본교 소속 전임강사 이상이면 연구원의 자격을 갖는다.
2. 연구소의 연구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 부인사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소장이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3. 연구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추천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4. 연구조교 및 직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

1.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 활동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2.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3.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- 1) 연구소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 - 2)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3)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4)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
4.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재정)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운영지원비, 사업수입, 찬조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

제9조(예산 및 결산)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0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시행일 : 이 규정은 2009년 9월 일부더 시행한다.